



의안번호	제66호
------	------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4. 13.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66호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출자 : 논산시장

1. 제안이유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함.(안 제2조)
- 나.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시에서 출자함.(안 제4조)
- 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8조)
- 라.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3. 11. ~ 2022. 3. 31.(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예산담당관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2. 강경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양지추모원 관리 및 운영사업
4. 쓰레기봉투 판매 관리 및 운영사업
5. 양촌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
6. 논산시청 공영주차타워 관리 및 운영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논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 및 제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설립 경비)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에 둔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체”를 “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으로 한다.

③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소 장	김 희 배
	팀 장	김 응 렬
	담 당 자	이 건 택 (746-8975)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세입 : 공단 위탁사업 영업수입
- 세출 : 자본금, 공단 대행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자본금), 제19조(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 비용추계결과 ※ 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반영

가. 추계의 전제

- 세입: 지방세, 세외수입(영업수익)
- 세출: 자본금, 공단 대행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

나. 추계결과 ※ 2022년은 하반기만 추계

- 세입 : 37,074,000천원
- 세출 : 37,074,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김 희 배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989,000	3,690,000	10,224,000	10,462,000	10,709,000	37,074,000
시비(지방세)		321,500	355,000	6,889,000	7,127,000	7,374,000	22,066,500
영업수입(세외수입)		1,667,500	3,335,000	3,335,000	3,335,000	3,335,000	15,007,500
세 출		1,989,000	3,690,000	10,224,000	10,462,000	10,709,000	37,074,000
자본금		200,000					200,000
영업비용		1,789,000	3,690,000	10,224,000	10,462,000	10,709,000	36,874,000
재원 조달		1,989,000	3,690,000	10,224,000	10,462,000	10,709,000	37,074,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989,000	3,690,000	10,224,000	10,462,000	10,709,000	37,074,000
	지방세	321,500	355,000	6,889,000	7,127,000	7,374,000	22,066,500
	세외수입	1,667,500	3,335,000	3,335,000	3,335,000	3,335,000	15,007,50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p.359-비용추계)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향후 5년 운영수지〉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5년 평균
I. 영업수입	3,335	3,335	3,335	3,335	3,335	16,675	3,335
경영지원실	-	-	-	-	-	-	-
체육사업팀	1,059	1,059	1,059	1,059	1,059	5,297	1,059
문화복지팀	2,276	2,276	2,276	2,276	2,276	11,378	2,276
환경사업팀	-	-	-	-	-	-	-
II. 영업비용	3,578	3,690	10,224	10,462	10,709	52,343	10,469
인건비	2,545	2,646	4,580	4,758	4,944	23,628	4,726
경영지원실	621	640	660	681	703	3,306	661
체육사업팀	1,183	1,232	1,283	1,337	1,393	6,427	1,285
문화복지팀	741	774	808	844	882	4,048	810
환경사업팀	-	-	1,828	1,896	1,967	9,846	1,969
운영비	1,033	1,044	5,645	5,704	5,765	28,715	5,743
체육사업팀	795	803	812	820	829	4,060	812
문화복지팀	238	240	243	246	248	1,215	243
환경사업팀	-	-	4,590	4,638	4,688	23,440	4,688
III. 영업이익	△243	△355	△6,889	△7,127	△7,374	△35,668	△7,134
(수지비율)	93.22%	90.39%	32.62%	31.88%	31.14%	31.86%	31.86%

주1) 환경사업팀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공단사업에 포함하여 분석함

(p.361-자본금)

5. 적정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5-1. 자본금 출자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논산시는 공단 설립에 대한 자본금으로 200백만원의 현금출자를 계획하고 있음
 ○ 법인이 설립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은 통상적으로 연간지출비용의 25% 내지 3개월분의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지자체의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므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유사 지역, 유사 규모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사례를 통해 논산시의 자본금 출자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

□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인 200백만원은 연간 지출비용의 1.95%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2.89% 수준, 총인건비의 5.40% 수준으로 나타남

○ 유사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평균적으로 연간 지출액 대비 1.92% 수준, 운영적자 대비 14.98% 수준, 총인건비의 3.64%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인 200백만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논산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유사 지방공단 자본금 비교>

(단위 : 백만원, %)

공단명	자본금	연간 지출액 대비	운영적자 대비	총인건비 대비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계획)	200	1.95%	2.89%	5.40%	
유 사 사 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300	2.28%		5.50%
	충주시시설관리공단	200	2.18%	29.03%	3.33%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00	1.12%	15.87%	2.2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00	1.97%	4.14%	3.68%
	문경관광진흥공단	200	2.43%	10.89%	5.32%

주) 연간 지출액 대비 = 자본금 / 연간 대행사업비 × 100, 운영적자 대비 = 자본금 / 연간 운영적자 × 100, 총인건비 대비 = 자본금 / 총인건비 × 100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궤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 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 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회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중간생략”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②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나. 자치단체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인사 활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¹⁾은 정원의 5% 이내에서 한시적 운영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소속공무원을 공사공단의 비상임 및 직원 이외 상근임원(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으로 파견 또는 겸임은 원칙적으로 금지